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주 문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2.11.22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. 11. 22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기획재정위원회(2002. 12.13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명호)

가. 제안이유

○ 수입증지 교환시 일부 규제 내용을 개선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"수입증지 교환시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"의 단서 규정을 삭제함
(안제 26조 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 사 결 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2. 11. 22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의안번호	제52호
의결연월일	2002.12.24 (제101회)

□ 제안이유

○ 수입증지 교환시 일부 규제 내용을 개선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○ "수입증지 교환시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"의 단서규정을 삭제함(안 제26조 제1항)

부천시조례 제　　호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중 단서를 삭제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증지의교환) ①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26조(증지의교환)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〈삭제〉